



07

CHAPTER

주요국 농식품 분야 보세, 가공공장 운영현황

I. 보세공장 개요 183

- | | |
|---------------------|-----|
| 1. 한국 | 184 |
| 2. 해외(일본, 미국, 유럽연합) | 187 |

II. 보세공장 운영제도 및 현황 188

- | | |
|---------------------|-----|
| 1. 한국 | 188 |
| 2. 해외(일본, 미국, 유럽연합) | 191 |

III. 국가별 제도 비교 199

- | | |
|---------|-----|
| 1. 한국 | 199 |
| 2. 일본 | 200 |
| 3. 미국 | 201 |
| 4. 유럽연합 | 202 |

IV. 결론 203

07

주요국 농식품 분야 보세, 가공공장 운영현황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공장
- 보세공장 운영의 주된 기대 효과는 ①가공무역 진흥 ②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
 - * 보세 상태의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 최종제품 반출 전까지 관세의 납부를 유보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가능
- 주요국(미국, 일본, EU)은 농식품 기업의 보세공장 입주를 허용
 - *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21.10.) 운영되는 보세공장의 15.9%가 농식품 가공기업이며, 규제 완화로 농식품 분야 보세가공 활성화

구분	업종 제한	식품가공업 입주	가공제품의 국내반입	농식품 기업 입주 현황
일본	없음	허용	예외적 허용* *시황 변화, 계약 파기 등 상황 발생 시 국내반입 허용	34개소('21.10. 기준)
미국	없음	허용	예외적 허용* *여송연(cigar), 부산물은 예외적으로 국내반입 허용	공시자료 없음
유럽연합	없음	허용	허용	공시자료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 기업 보세공장 입주가 불가능했으나, '21년 12월부터 농축산물 가공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⁸³⁾
 - * 기존 보세공장제도는 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 농축산물 가공기업의 입주를 제한
 -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21.06.)으로 기존 양허관세 농축산물 63개 품목⁸⁴⁾의 자유무역지역 조건부** 입주가 허용 예정
 - ** (입주조건) ①가공품목 전량 재수출 ②보세사 채용 ③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으로 우리 농식품 가공무역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보세가공 식품의 국내반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수립 필요
 - * 시장환경 변화, 계약 파기 등으로 보세가공한 제품의 수출이 불가할 경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손실 예방을 위한 예외조항 필요

8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2021.06.07.)

84) 소고기, 분유, 마늘 등

I 보세공장 개요

-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연합은 보세 상태의 원재료를 가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별 보세공장의 정의와 운영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정의)** 보세공장은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료로 물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장
 - 국가별 보세공장의 정의는 모두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일본, 미국, 유럽연합) 대비 보세공장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⁸⁵⁾
 - **(운영효과)** 국가와 기업은 보세공장 운영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가	· (가공무역 발달) 외국물품 또는 국내물품과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 또는 수입함으로써 가공무역의 진흥에 이바지 · (수출진흥) 보세 상태의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	· (원재료 공급선 다변화)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원산지와 무관하게 보세 상태의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고려 가능 - 보세공장 외에서는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FTA 체결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최종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보세공장품 가공 시 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보세 상태의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원재료 공급선 다변화 가능 · (기업 자금부담 경감)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관세를 유보할 수 있어, 자금부담 경감 - 완제품을 수출 및 판매하기 전까지 관세 납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완제품 관세율이 원재료의 관세율 대비 낮을 시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해소됨 · (통관절차 간소화) 원재료 수입 시 관세 부과·징수 절차가 생략되므로 통관절차 간소화

85)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보세공장을 ①보세공장 ②자율관리 보세공장 ③특별 보세공장으로 구분

1. 한국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구역’으로 정의⁸⁶⁾

-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은 ①지정보세구역 ②특허보세구역 ③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
 - (지정보세구역)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장소를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①물품의 장치 및 검사 ②통관 신속화 등의 기능 보유
 - (특허보세구역) 개인·기업이 신청할 경우 세관장이 심사를 통해 사용을 특허해주는 형태의 보세구역으로, ①보관 ②제조 ③건설 ④전시 ⑤판매 등의 기능 수행 가능
 -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기업이 입주 후 세관장에게 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I-1〉 우리나라 보세구역의 종류



*출처: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 KCLA(www.kcla.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보세공장은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공장으로, 특허보세구역으로 분류

- 가공무역의 진흥 및 관세 행정 절차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구역에서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음⁸⁷⁾

86) 한국관세물류협회 정의 인용

87) 한국관세물류협회 정의 인용

□ 보세공장 유형은 ①보세공장 ②자율관리 보세공장 ③특별 보세공장 등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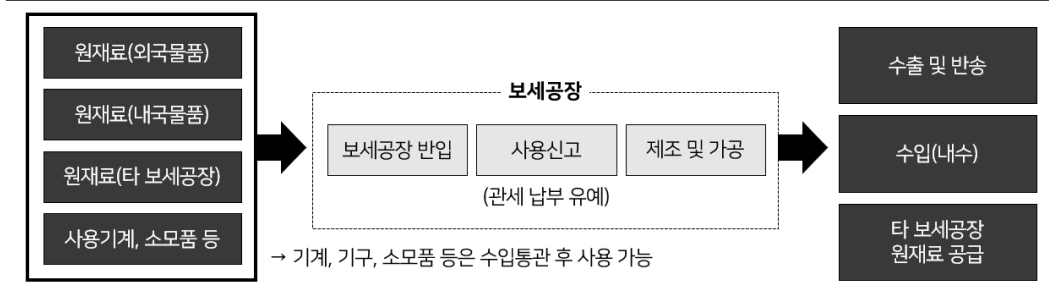
- 특별보세공장은 제조품목, 제조품목의 수출국, 허가대상에 따라 ①귀금속류 보세공장
②기내식 보세공장 ③FTA형 특별 보세공장 ④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분류

보세공장		·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공장
자율관리 보세공장		· 보세화물의 반출입 및 관리 절차의 일부가 생략 가능한 유형의 보세공장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특혜대상
특별 보세 공장	귀금속류 보세공장	· 귀금속류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요건을 적용하여 귀금속 및 보석류 제조, 가공을 허용하는 보세공장 · 물품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기기, 장비,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금고 등을 구비한 기업(개인)이 특허 대상
	기내식 보세공장	·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무원과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내식을 외국물품, 국내물품으로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FTA형 특별 보세공장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FTA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 · 한국과의 FTA 체결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연간 수출실적의 1/3 이상을 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보세화물의 반출입 및 관리 절차(원재료 사용 신고를 전산으로 자동 수리 등)에 대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유형의 보세공장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년도 해당 공장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2020.11.27.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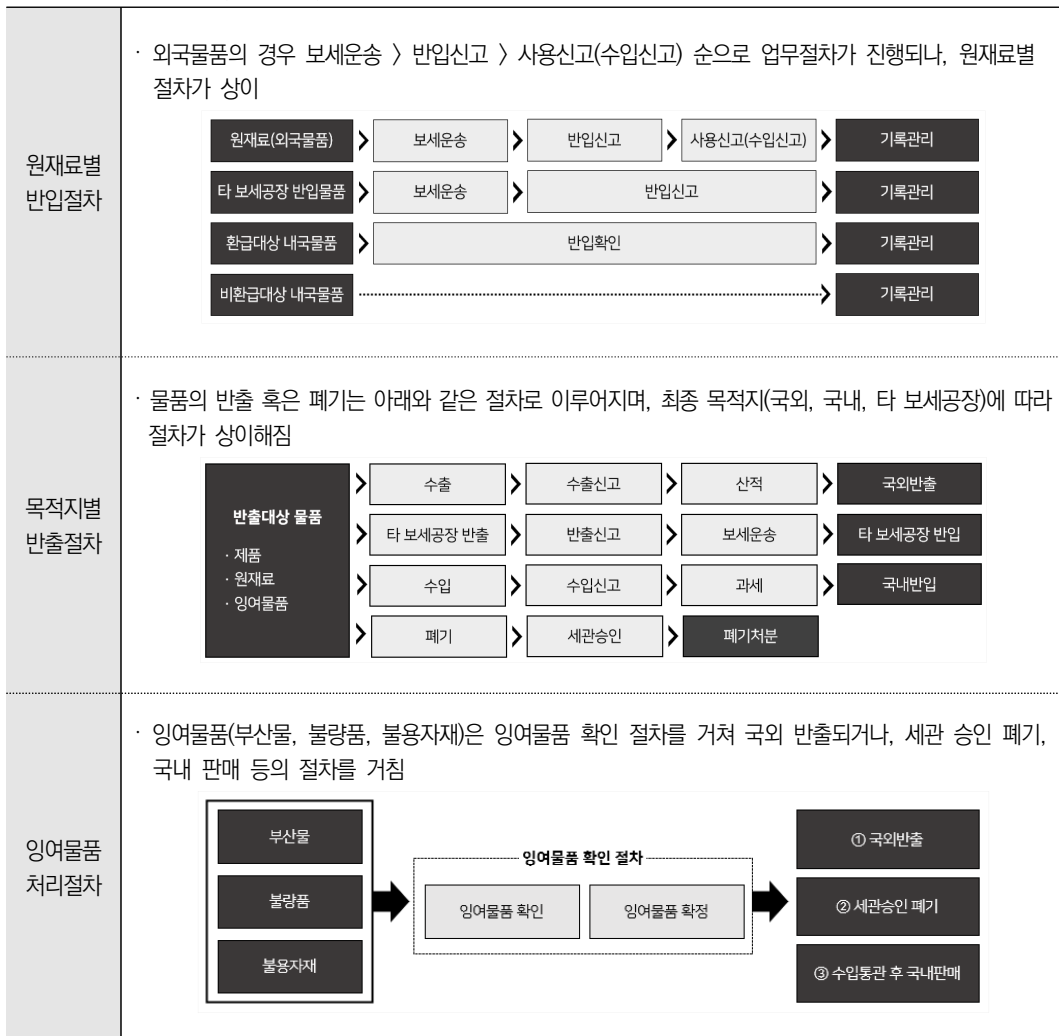
□ 우리나라 보세공장의 업무처리 절차는 원재료 반입 > 반입신고 > 사용신고 > 제조 및 가공 > 반출 순

〈그림 I -2〉 우리나라 보세공장 종합 업무절차



- 원재료 반입절차, 최종물품 반출절차, 잉여물품 처리절차는 상황에 따라 상이해짐
- **(원재료 반입)** 외국물품, 내국물품 등 사용하는 원재료에 따라 반입절차가 상이하므로 유의 필요
- **(반출)** 가공이 완료된 최종물품을 반출할 경우, 물품의 최종 목적지(국외, 국내, 타보세공장)에 따라 거치는 절차가 상이
- **(잉여물품 처리절차)** 물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유형(부산물, 불량품, 불용자재)에 따라 국외반출, 폐기 또는 국내 판매됨

〈그림 I-3〉 우리나라 보세공장 유형별 반입·반출·잉여물품 처리절차



*출처: 관세청(www.custom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해외(일본, 미국, 유럽연합)

가. 일본

□ 보세구역을 ①지정보세지역 ②보세장치장 ③보세공장 ④보세전시장 ⑤종합보세지역으로 분류

○ 보세공장은 ‘세관장 허가로 외국화물 및 내국화물의 보세가공이 허용된 구역’으로 정의

지정보세지역	외국물품의 선적 및 하역, 운반, 일시적 장치 등이 허용되는 보세구역으로 컨테이너 야드 등이 해당 유형에 포함
보세장치장	외국화물의 선적 및 하역, 운반, 장치가 허용되는 보세구역으로 창고, 지붕이 있는 기타 건물 등이 해당 유형에 포함(세관장 허가 요구)
보세공장	외국화물의 가공·제조(혼합을 포함)를 허용하는 보세구역(세관장 허가 요구)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시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
종합보세지역	세관장 허가로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위에 언급된 4가지 유형이 보유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가능한 보세구역

나. 미국

□ 미국은 연방규정을 통해 보세창고(보세구역)를 아래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

○ 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은 유형6, 유형7로 분류되며 수출용 물품 보세가공공장, 수출·내수용 철강 보세가공공장 등이 존재

유형1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보세장치장으로, 세관검사물품, 압류된 상품의 보관에 사용
유형2	소유자의 상품 또는 위탁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세창고
유형3	수입물품의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보세창고
유형4	중량이 큰 화물 또는 벌크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창고
유형5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엘리베이터 포함)
유형6	수출을 전제로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의 보세가공을 허용하는 보세창고
유형7	수출 또는 국내 소비를 전제로 수입 철강의 가공 및 제련을 위한 보세창고
유형8	세관 감독하에 운영인의 비용으로 수입물품을 청소, 분류, 재포장 및 상태 변경을 허용하는 보세창고 (*가공은 허용되지 않음)
유형9	면세점
유형10	(삭제됨)
유형11	일반 주문 상품의 보관 및 처분용 보세창고

다. 유럽연합

□ 유럽연합의 보세공장은 유럽연합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 상태의 수입물품을 제조, 수리, 가공(역내가공)할 수 있는 장소를 일컫음

○ 보세가공과 관련한 제도가 존재하나, 보세구역 및 보세공장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및 분류는 존재하지 않음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II 보세공장 운영제도 및 현황

1. 한국

- 현재('21.11.) 우리나라는 관세청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보세공장 특혜 적용대상, 설치·운영 특허 신청방법, 중소기업 대상 특허요건 등을 명시
- **(특혜 적용대상)** 외국물품이나 국내물품을 원재료로 수출 또는 수입용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조립,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관장 특허 시 보세공장에 입주할 수 있음
 - 농·축·수산물의 경우 손모율⁸⁸⁾ 불안정, 취약산업(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 보세공장 내 입주가 불허됨⁸⁹⁾

(참고) 우리나라 보세공장 특혜 적용대상

- 보세공장 운영 및 활용을 위해서는 세관장의 특허가 요구되며, 아래의 경우 특허신청이 가능함
 -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원재료로 수출용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조립, 포장하거나 이 외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
 - 수입용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가 제한됨
 - 법 제175호에 따라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취급하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 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못한 자
 - 제25조 1항 각 호에 명시된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부패·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작업
 -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 단순 조립작업
 - 폐기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모든 보세작업이 장외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출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2020.11.27. 일부개정)

- **(특허 신청방법)** 관세청에서 명시한 신청서류 제출 후, 세관장 허가 시 보세공장의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됨

88)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재료의 손실 비율

89) 기내식 보세공장의 경우 예외

(참고) 우리나라 보세공장 설치 운영 특허 신청방법

- 본 규정에서 명시한 별지1호 서식과 하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 위험물품 취급 공장의 경우, 유관 행정기관 장의 허가서(승인서) 사본
 - (임차인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신설공장이어야 함)
 - 「전기사업법」의 제63조, 제65조, 해당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검사확인증
 - 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감독하는 임원의 인적사항
-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본 규정 별지 제2호서식과 동일한 보세공장설치 운영 특허장을 발급받을 경우 보세공장의 설치 운영이 허용됨

*출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2020.11.27. 일부개정)

- (중소기업 특허요건) 관세청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완화된 특허요건을 적용⁹⁰⁾
 - 주요 내용은 ①특허대상 ②특허요건 ③특례적용 대상업무 ④특례적용 범위

(참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상 보세공장 특허요건

특허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특허요건	· (시설요건) 공장등록증명서 구비 · (관리요건) 보세사 채용(채용 예정일 경우 조건부* 허용), 물품관리체계 구축 * 화물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1년 이내에 보세사 채용계획서 제출 시 허용 · (신청방법) ①보세공장 특허신청서와 ②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 * 현재 보세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상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 제출이 요구	
특례적용 대상업무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신고, 사용신고 ·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 · 보세공장 내 보세작업 · 잉여물품의 관리 및 처리	
특례적용 범위	분야	특례 적용 내용
	사용신고	· 공휴일, 야간 시 선 사용 후 신고 허용 · 외국물품 사용신고 수리 시 전산 처리 허용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가능 - 자율관리공장(중소기업형 포함) 간 보세운송절차 생략 · 보세운송신고 수리 시 전산 처리 허용
	장외 일시 장치	· 장외 일시 장치 및 기타 작업 허가는 보세공장의 사용 승인 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를 통해 일괄 허가 · 허가받은 작업 물품은 기록 관리 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
	장외작업	
	타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내국작업	· 완료 보고는 운영상황 보고로 갈음
	잉여물품	·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출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2020.11.27. 일부개정)

90) 해당 규정은 2020년 7월 11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추가되었음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일부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될 예정⁹¹⁾

- 2021년 상반기 우리 가공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가공식품 수출의 전략적 중요도가 상승⁹²⁾
 - 2021년 상반기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액은 34억 3,610만 달러(한화 약 4조 89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⁹³⁾
 - 한류 영향으로 인한 한식 인기,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 증가로 우리 농식품, 특히 가공식품의 수출 급증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이 불가능했던 농축산물⁹⁴⁾ 제조·공업체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 입주는 ①제조·가공 품목의 전량 재수출 ②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③보세사 채용 조건부로 허용됨
 - 또한,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밀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①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완제품의 국내 반출 ②역외 작업(자유무역지역 외 작업) 등이 제한
-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중순 시행 예정으로, 현재(2021.11.)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규정 수립 및 개선을 진행 중
- 자유무역 내 농식품 가공·수출 허용으로 관세유보 등 혜택이 발생, 기존 보세공장도의 비수혜 품목이었던 우리 가공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표Ⅱ-1〉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차이(참고)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

9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06.07.)

92)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실적 기록',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7.06.)

93) 음료류(23.7%), 소스류(20.7%) 등 품목의 수출액이 급증

94)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던 소고기, 분유, 마늘 등 63개 품목**

(**전체목록은 원문참조: <https://bit.ly/3FrlcXS>, 2021.11.10. 검색)

2. 해외(일본, 미국, 유럽연합)

- 선진국(일본, 미국, 유럽연합)은 보세공장 운영 시 농식품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며, 가공이 완료된 제품의 국내 반입 역시 허용(원칙적 허용 또는 조건부 허용)
- (일본) 세관장 허가에 따라 농식품 기업·조합의 보세공장 입주를 허용하며, 가공이 완료된 최종제품은 수출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국내 반입(수입)을 허용
 - 일본 농식품 보세공장은 총 34개소로, 전체 보세공장의 15.9%에 해당(2021.10.)
- (미국) 기업의 업종과 무관하게 보세공장 사용이 가능,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은 수출을 원칙으로 하나, 여승연(시가),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폐기물·부산물은 국내 반입(수입)이 허용
 - 농식품 보세공장 현황 관련 공시된 정보 없음
- (유럽연합) 농식품 가공기업의 보세공장 입주가 허용, 역내가공제도를 통해 보세구역에서 가공된 물품의 자유로운 수출 및 수입을 허가
 - 농식품 보세공장 현황 관련 공시된 정보 없음

가. 일본

- 일본은 관세법 제4절에서 보세공장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

〈표Ⅱ-2〉 일본의 보세·가공공장 관련 법령 및 제도

법령코드(세부조항)	주요내용	원문출처(URL)
「관세법」 제4절 제56~62조	· 보세공장 관련 규정(상세 내용은 하기 참조)	https://bit.ly/3DkTkUH
「관세법」 제4절 제56조	· 보세공장의 허가	
「관세법」 제4절 제57조	· 보세공장의 외국화물 유치기간	
「관세법」 제4절 제58조	· 보세작업의 신고	
「관세법」 제4절 제58-2조	· 보세작업을 거친 제품의 납세신고 등 특례	
「관세법」 제4절 제59조	· 내국화물의 사용	
「관세법」 제4절 제61조	· 보세공장 밖에서의 보세작업	
「관세법」 제4절 제61-2조	· 지정 보세공장의 간이 수속	
「관세법」 제4절 제61-3조	· 보세공장 운영자의 의무	
「관세법」 제4절 제61-4조	· 보세장치장 규정의 준용	
「관세법」 제4절 제61-5조	· 보세공장 허가의 특례	

*주: 관세법 제4절 60조는 삭제됨

- (보세공장의 허가) 세관장의 허가가 요구되며, 허가 대상 업종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식품기업·조합의 입주 가능
 - 관세법은 보세공장을 ‘외국물품을 가공하거나, 해당 물품을 원료로 제조, 개조, 분리 등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허가한 곳’으로 정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보세공장의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조합⁹⁵⁾은 ①보세공장허가신청서 ②신용상태 증빙서류 ③공장 도면 ④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
- 허가대상 업종은 별도 존재하지 않으나, 작업에 활용 가능한 외국물품은 주원료에 직접 혼합·첨가되어 명확한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
- **(화물 유치 기간)** 보세공장의 화물 유치 기간은 해당 화물이 보세공장으로 반입이 허가된 날로부터 최대 2년
- **(보세작업의 신고)** 보세공장 내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작업의 개시 및 종료 시에 그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작업 개시 시 ①보세작업의 종류 및 기간 ②사용되는 화물(원재료) 관리번호 ③원재료의 품명 ④내국·외국화물의 수량 등의 정보를 세관에 구두로 신고
 - 작업 종료 시에는 상기 언급된 정보(①~④번)와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화물의 관리번호, 품명, 수량 등의 추가 정보를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
- **(간이 수속)** 원료품의 제조 수율이 안정되어있거나, 그 외 작업의 성질 등을 감안해 세관장이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제조품은 보세작업의 개시 및 종료 시의 신고가 강제되지 않음
- **(내국화물의 사용)** 보세작업 중 내국화물과 외국화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해당 제품이 일본으로 반입될 경우 제품이 외국화물로 취급되어 관세를 납부 등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외국화물과 동일한 수입·통관절차를 거침
- **(역외작업)** 세관장은 특정 보세작업이 자국 무역진흥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시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역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음
- **(운영자의 의무)** 보세공장 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반입·반출·가공된 외국화물에 대한 장부를 마련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해야 함
- **(물품의 반출)** 제조가 완료된 물품은 세관장 허가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특정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제조된 물품은 수출을 원칙으로 하나, 보세작업 후의 시황, 계약 파기 등의 상황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음

95)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 제12절(조합) 제666조 - 제68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합

□ 2021년 10월 기준, 일본에서 운영되는 농식품 보세공장은 총 34개소로, 전체 보세공장의 15.9%에 해당⁹⁶⁾

- 보세공장 내 가장 활발히 생산되는 품목은 정제당(20.6%)⁹⁷⁾, 조제분유(11.8%), 치즈와 치즈 제품(11.8%), 설탕 과자류(5.9%) 순
 - 수입산 설탕, 유청, 전분, 천연 치즈 등을 보세 상태로 가공하여 정제당, 설탕 과자, 유아용 조제분유, 가공 치즈 등의 품목을 생산
 - 이 외에도 식품원료(텍스트린, 아미노산 등), 곡물가공품 등 품목이 생산

〈표Ⅱ-3〉 일본의 농식품 분야 보세공장 운영현황(2021.10.)

기업명	관할세관	보세작업의 종류	사용하는 외국화물의 종류
1 와다제당(주) 에도가와 공장 和田製糖(株)江戸川工場	도쿄 세관	정제당의 제조	조당(粗糖)
2 (주)다카오카야 사이타마 공장 (株)高岡屋埼玉工場	도쿄 세관	구운 김, 양념 김 등 제조	건조 김
3 (주)메이지 사이타마 공장 (株)明治埼玉工場	도쿄 세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	농축 유청 단백질 분말, 유청 분말, 탈지분유, 조제분유
4 무리나가 유업(주) 도쿄 타마 공장 森永乳業(株)東京多摩サイト	도쿄 세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	탈지분유, 조제분유용 유청 혼합물, 탈염 유청 분말, 탈염 버터밀크 파우더
5 (주)카토 미봉원 본점 요코하마 보세공장 (株)加藤美峰園本舗横浜保税工場	요코하마 세관	탈단백 꿀 제조	천연 꿀
6 네슬레 일본(주) 카스미가포 공장 보세공장 ネスレ日本(株)霞ヶ浦工場保税工場	요코하마 세관	탈지분유 등을 활용한 식품원료 제조	탈지분유(유지방 1% 이하), 텍스트린
7 아사히그룹 식품(주) 도치기 사쿠라 공장 보세공장 アサヒグループ食品(株)栃木さくら工場保税工場	요코하마 세관	유아용 조제분유, 임산부 수유부용 조제분유 제조	유청, 탈지분유
8 태평양제당(주) 보세공장 太平洋製糖(株)保税工場	요코하마 세관	조당(粗糖), 정제액당(精製液糖), 상백당(上白糖), 백설탕(グラニュー糖), 삼온당(三温糖) 제조	조당(粗糖)
9 가스가이 제과(주) 가스가이 공장 春日井製菓(株)春日井工場	나고야 세관	설탕과자 제조	정제당

96) 2021년 10월 기준, 일본에서 운영되는 보세공장은 총 214개소로 조사

97) 정제당, 정제액당, 상백당, 삼온당 등 포함

10	일본 주스 터미널(주) 日本ジュース・ターミナル(株)	나고야 세관	농축 오렌지 주스 제조	농축 오렌지 주스
11	이토 타다시 설탕(주) 伊藤忠製糖(株)	나고야 세관	정제당(精製糖), 정제액당(精製液糖) 제조	조당(粗糖)
12	교토 그레이인 시스템(주) 나라공장 京都グレインシステム(株)奈良工場	오사카 세관	아마(亞麻) 곡물의 볶기	아마(亞麻) 곡물
13	산와 전분 공업(주) 본사 공장 三和澱粉工業(株)本社工場	오사카 세관	타피오카 전분 제조	타피오카 전분
14	닛신제당(주) 이마후쿠 공장 日新製糖(株)今福工場	오사카 세관	상백당(上白糖), 중쌍당(中双糖), 삼온당(三温糖) 등 제조	조당(粗糖)
15	닛타젤라틴(주) 오사카 공장 新田ゼラチン(株)大阪工場	오사카 세관	젤라틴 제조	젤라틴
16	해양식품(주) 본사 공장 マリンフード(株)本社工場	오사카 세관	버터 가공	버터
17	미각당(주) 나라 공장 味覚糖(株)奈良工場	오사카 세관	사탕류(젤리 포함)	설탕, 유청 분말, 무염 버터, 연유, 버터밀크 파우더
18	마린푸드(주) 이즈미오쓰 공장 マリンフード(株)泉大津工場	오사카 세관	천연 치즈, 가공 치즈(슈레드형) 제조	천연 치즈
19	간사이제당(주) 関西製糖(株)	오사카 세관	정제액당(精製液糖), 상백당(上白糖), 삼온당(三温糖) 등 제조	조당(粗糖)
20	(주)아이스 식품 (株)愛須食品	오사카 세관	우메보시(매실) 가공품(梅干加工品)	염장 반건조 매실
21	마린푸드(주) 나가하마 공장 マリンフード(株)長浜工場	오사카 세관	치즈, 버터, 우유 등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의 가공 및 제조	천연 치즈, 버터
22	칼비(주) 교토 공장 カルビー(株)京都工場	오사카 세관	시리얼 식품 제조	동결 건조 딸기·사과·귀리
23	(주)우케 도야마 입선 공장 (株)ウーケ富山入善工場	오사카 세관	무균 쌀밥 제조	정미(태국산 쌀)
24	글리코 매뉴팩처링 재팬(주) 카시와하라 공장 グリコマンファクチャリングジャ パン(株)柏原工場	고베 세관	유아용 조제 분유 제조	제조 유청
25	롯데 버터(주) 고베 공장 六甲バター(株)神戸工場	고베 세관	가공 치즈 제조	천연 치즈
26	(주)부작 사탕 본점 히메지 공장 (株)扇雀飴本舗姫路工場	고베 세관	설탕과자 제조	정제당
27	(주)타키유키 롤프 니시노미야 플랜트 (株)宝幸ロルフ西宮プラント	고베 세관	가공 치즈 제조	천연 치즈, 우유 단백질

28	미쓰야 화학공업(주) 松谷化学工業(株)	고베 세관	덱스트린 제조	타피오카 전분
29	(주)하야시바라 오카야마 기능 단수화물 공장 (株)林原岡山機能糖質工場	고베 세관	트레할로스 제조	타피오카 전분
30	이케다 당화공업(주) 미노시마 공장 池田糖化工業(株)箕島工場	고베 세관	액상 캐러멜, 분말 캐러멜 제조	정제당
31	간문제당(주) 関門製糖(株)	모지 세관	정제당 제조	조당(粗糖)
32	미쓰이제당(주) 후쿠오카 공장 三井製糖(株)福岡工場	모지 세관	정제당 제조	조당(粗糖)
33	아지노모토(주) 규슈 사업소 味の素(株)九州事業所	나가사키 세관	페닐알라닌, 아르기닌 제조 (필수 아미노산)	타피오카 전분, 자당
34	오키나와 햄 종합식품(주) 沖縄ハム総合食品(株)読谷	오키나와 세관	육류제품, 육가공품 제조	우유, 돈육

*주: 기내식 제조기업, 의약품 제조기업, 수산식품기업 등은 제외

*출처: 일본 세관(www.customs.go.jp)

나. 미국⁹⁸⁾

- 미국은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과 연방규정(CFR)을 통해 보세공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표II-4〉 미국의 보세·가공공장 관련 법령 및 제도

법령코드	주요내용	원문출처(URL)
19 USC 1311	· 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일반요건	https://bit.ly/3kG6mVm https://bit.ly/30r7ipo
CFR Title 19 §19.13	· 보세공장(Manufacturing Warehouse) 설립요건	
CFR Title 19 §19.13a	· 보세공장의 기록 보관 요건	
CFR Title 19 §19.14	· 보세공장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부자재) 관련 규정	
CFR Title 19 §19.15	· 가공된 물품의 반출요건 · 가치를 보유한 부산물·폐기물의 반출 요건	

- **(일반요건)** 보세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증류주를 제외한 일반식품 가공기업의 보세공장 활용이 허용됨

98) 미국의 보세공장 운영현황 정보는 별도 확인되지 않음(2021.11. 기준)

일반요건	· 미국은 보세공장제도 적용 업종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식품기업 역시 보세구역에 입주하여 보세공장을 활용할 수 있음 - 단, 해당 규정에서 명시된 원료*와 해당 원료의 혼합물, 희석하여 증류주를 제조하는 것은 금지됨 *곡물, 전분, 당밀(molasses), 설탕
입주기업의 의무	· 보세공장 운영자(사업자)는 해당 창고에서 제조할 모든 물품의 목록을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해당 자료는 제조되는 물품의 ①제조방식 ②사용되는 성분(원재료)의 명칭 및 수량 등을 포함해야 함
반입이 허용된 부자재	· 사업자는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완제품을 담는 데에 사용되는 패키지, 덮개, 용기, 상표, 라벨을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음 - 단, 보세공장의 건설·수리에 사용되거나, 보세공장 내 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치, 도구, 부품 등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설립요건)** 보세공장은 기타 수입물품과 분리가 가능하고 보안이 보장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세관 직원이 검사를 진행하기에 원활한 구조를 보유해야 함
 - 보세공장은 기타 수입물품(기타 과세대상 물품)의 보관 장소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체계 확보 필요
 -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의 물품은 관할 세관의 직원이 필요시 원활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샘플 채취가 용이하도록) 배치되어 있어야 함
- **(신청요건)** 보세공장 신청을 위해서는 공장의 규모 및 용도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원료의 가공은 금지됨
 - 보세공장 운영을 신청한 사업자는 ①창고의 규모 ②구조 ③위치 ④취급품목 ⑤제조하려는 모든 물품의 목록과 구체적 상품명 ⑥성분명(원재료명) ⑥사용되는 원재료 및 과세대상 물품의 양 등의 자료를 관할 세관에 제출
 - 보고되지 않은(세관으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원재료·성분을 포함하는 물품의 제조 및 반출은 엄격히 금지됨
- **(기록 보관)** 보세공장 운영인은 재고정리장부, 회계장부에 ①모든 물품의 반입·반출 ②모든 제조·가공과정 ③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대한 세관 감사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함

- **(물품의 반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으며 세관 감독하에 수출 및 선적이 이루어짐
 - 여송연(cigar)과 선박용품은 예외적으로 국내반입이 허가됨
 - 또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입원재료의 부산물 및 폐기물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경우 미국으로 반입(수입)될 수 있음
 -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반출할 시에도 세관 신고가 요구되며, 해당 물품이 수출되지 않았을 경우 관세 환급이 불가능

다. 유럽연합⁹⁹⁾

- 유럽연합은 관세법을 통해 보세공장 관련 일반조항을 명시, 역내가공제도와 역외가공제도에 대한 별도 조항을 보유

〈표Ⅱ-5〉 유럽의 보세·가공공장 관련 법령 및 제도

법령코드(세부조항)	주요내용	원문출처(URL)
REGULATION (EU) No 952/2013	유럽연합 관세법(개정안)	https://bit.ly/3DoOLJ9
TITLE VII1) Chapter 52) Section 1	·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TITLE VII1) Chapter 52) Section 2	· 역내가공제도(Inward Processing)	
TITLE VII1) Chapter 52) Section 3	· 역외가공제도(Outward Processing)	

1) Special Procedures

2) Processing

- **(역내가공제도)** 비(非)EU 국가에서 EU로 수입한 물품을 보세 상태로 가공하여, 비EU 국가로 재수출하거나 EU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입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①부가가치세 ②수입관세 등의 부과가 면제됨
- **(역외가공제도)** EU산 원재료를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재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역외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 역내가공제도 및 역외가공제도에는 업종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농식품 기업에도 해당 제도의 적용이 가능

99) 유럽연합의 보세공장 운영현황 정보는 별도 확인되지 않음(2021.11. 기준)

- 단, 역외가공제도의 경우 일부 품목(주로 관세 혜택을 이미 받은 품목)에 대해 제도의 적용을 조건부로 제한하고 있음

□ 역내가공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EU 세관 당국의 허가가 요구되며, 허가된 기한 내 역내 보세가공이 허용됨

- **(일반사항)** 제도의 적용을 위해 EU 세관 당국의 허가가 요구,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유럽연합 관세영역 내에서 가공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세관 당국 허가 시 예외적으로 관세영역 외에서의 가공작업도 가능)
 - 작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것임을 증명해야 함
 - 관세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보증을 제공
 - 상품의 가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 **(반출 기한)** 역내가공·생산된 물품은 EU 세관 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 반출되어야 하나, 신청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일시적 재수출)** EU 세관 당국은 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적 재수출을 통한 역외가공을 허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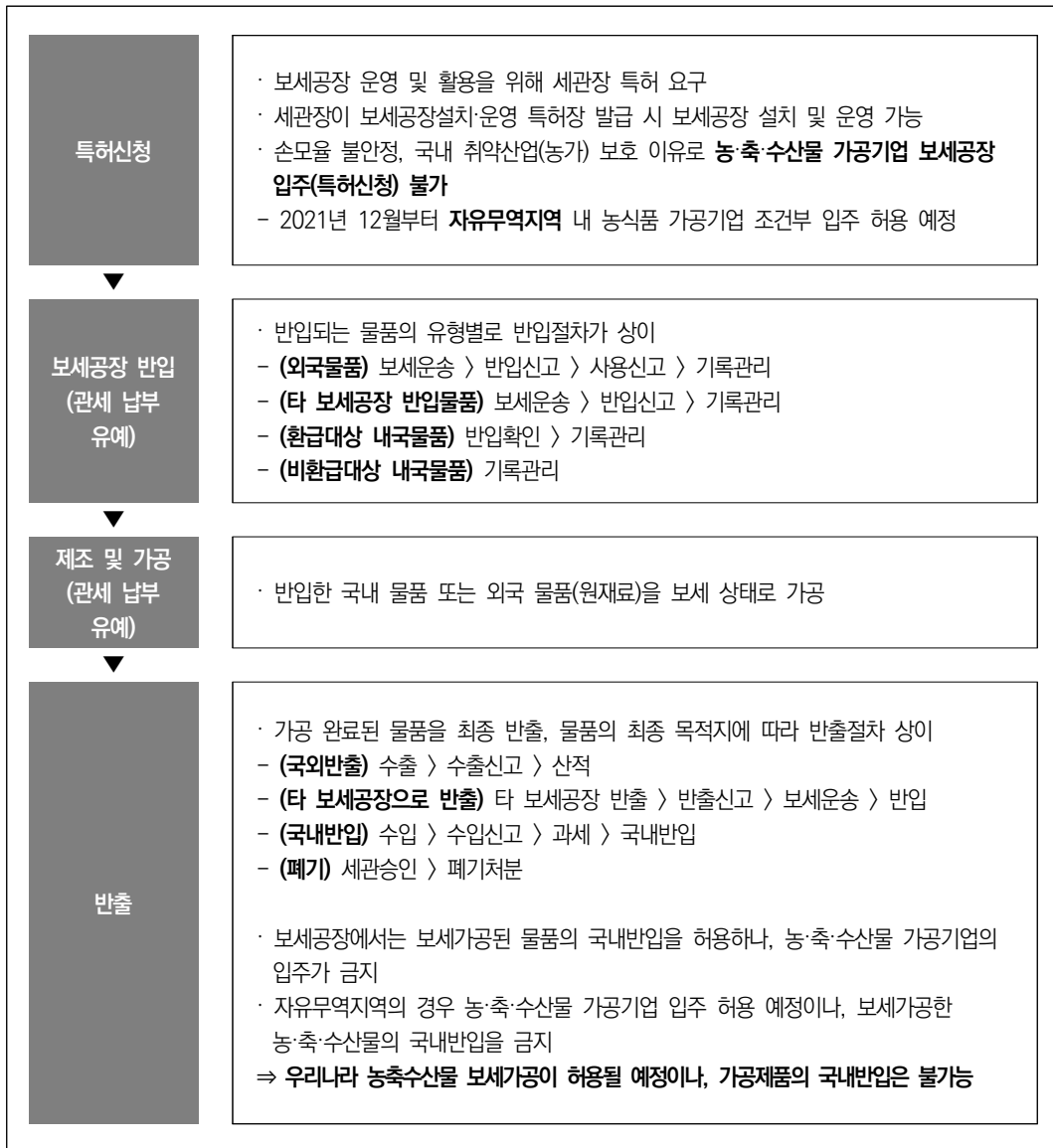
□ 역외가공제도를 통해 역외 보세작업(보세가공) 역시 허용

- **(금지품목)** 아래에 해당되는 EU산 품목은 역외가공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수출 시 수입 관세가 환불 또는 면제되는 품목
 - 해당 상품이 최종 사용 목적(end-use)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 수출 전 자유 유통을 위해 관세가 저감되거나 면제된 채로 통관된 상품
 - 해당 상품이 수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예외
 - 수출 시 환급금(export refunds)이 발생하는 품목
 - 수출 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환급금 외의 금전적 혜택이 발생하는 품목
- **(반출이 허용된 기간)** EU 세관 당국은 반출된 물품이 EU로 재수입되어야 하는 일시, 유럽연합 내 유통되어야 하는 일시를 명시해야 함

Ⅲ 국가별 제도 비교

1. 한국

〈그림Ⅲ-1〉 우리나라 보세공장 운영 프로세스별 주요 제도 내용



*출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

01

02

03

04

05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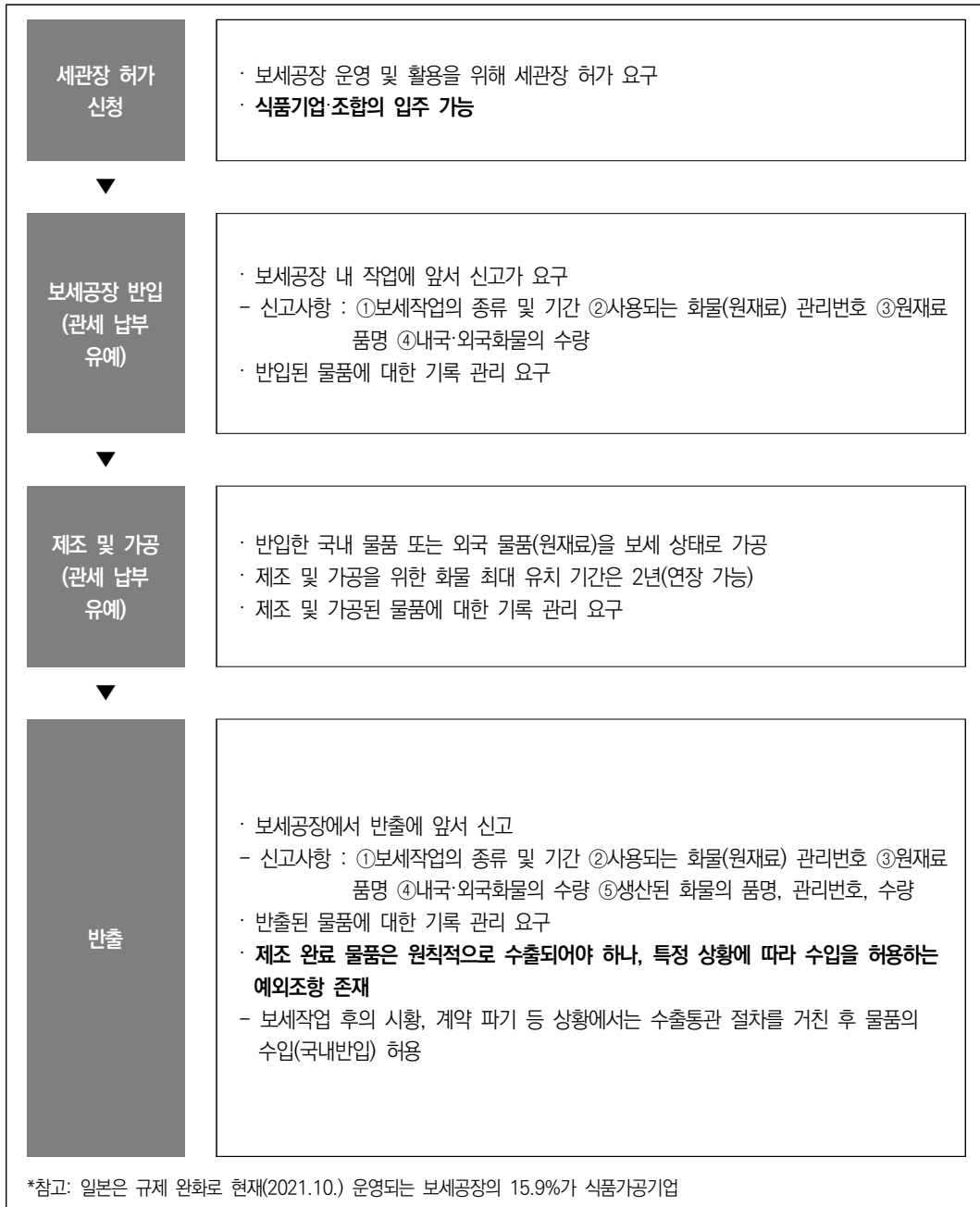
09

10

11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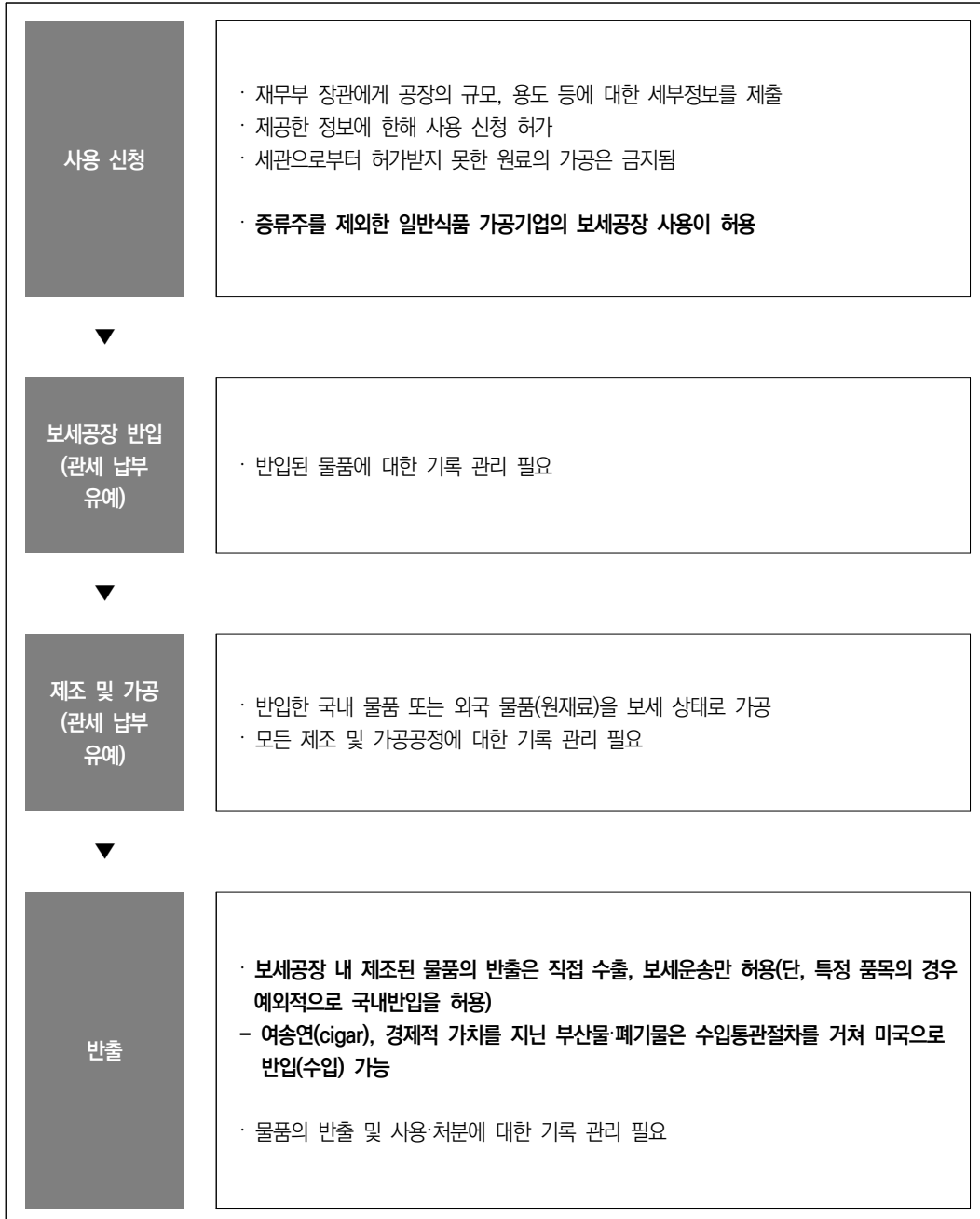
〈그림Ⅲ-2〉 일본 보세공장 운영 프로세스별 주요 제도 내용



*출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

3. 미국

〈그림Ⅲ-3〉 미국 보세공장 운영 프로세스별 주요 제도 내용



*출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4. 유럽연합

〈그림Ⅲ-4〉 유럽연합 보세공장 운영 프로세스별 주요 제도 내용

	역내가공제도 (역내에서 보세가공 → 자유롭게 수출·수입)	역외가공제도 (역외에서 보세가공 → EU로 재수입)
허가신청	· EU 세관당국의 허가 필요 · 농식품 기업에 적용	· EU 세관당국의 허가 필요 · 농식품 기업에 적용
보세공장 반입 (관세 납부 유예)	· 비(非) EU산 원재료만 반입	· EU산 원재료를 역외 보세구역에 반입
제조 및 가공 (관세 납부 유예)	· 비(非) EU산 원재료를 역내 보세구역에서 가공 및 제조 · EU 세관당국은 역외가공제도 사용을 위한 일시적 재수출을 허용할 수 있음	· EU산 원재료를 역외 보세구역에서 가공 및 제조
반출	· 세관이 정한 반출 기한 준수(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연장 가능) · 제품의 국내반입 및 수출 허용	· 세관이 정한 반출 기한 준수(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연장 가능) · EU 국가로의 재수입만 허용

*출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

IV 결론

□ 우리나라 보세공장 제도는 주요국과 유사한 운영형태를 띠

- 보세공장 이용을 위해서는 세관장 허가가 요구되며, 입주기업은 물품의 반입·반출·가공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함

〈표Ⅲ-1〉 우리나라와 주요국 보세가공 지원제도 비교

구분	대한민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농식품 기업의 보세구역 입주	비허용*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 입주 허용 예정 (‘21.12.)	허용* *증류주 제외	허용* *기업 및 조합의 입주를 모두 허용	허용
농식품 기업의 보세구역 입주 현황	없음	-	총 34개소 (‘21.10.)	-
가공 품목(농식품)의 국내반입 허가 여부	비허용	예외적 허용* *여송연(시가),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부산물 또는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적 허용* *계약파기, 급격한 시황변화 등의 상황 발생 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반입 허용	원칙적 허용* *역내·역외가공제도
입주 및 운영 요건	설치·운영 특허신청 후 세관장 허가 시 입주 가능, 반입·반출 물품의 기록 요구	공장의 규모·용도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후 세관 허가 시 입주 가능, 반입·반출 물품 및 제조·가공 관련 기록 요구	세관장 허가 시 입주 가능, 보세공장 내 작업 개시 및 종료 시에 세관 신고, 매해 반입·반출·가공된 외국화물 기록 요구	역내·역외가공제도 활용 시 EU 세관당국 허가 필요, 세관 통지 반출기한 준수 필요(연장 가능)

□ 단, 주요국은 보세가공 업종에 제한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 현행 제도(‘21.11.)의 경우 업종 제한이 존재¹⁰⁰⁾

- 주요국은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보세가공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¹⁰¹⁾ 농식품 가공기업의 보세공장 입주를 제한

100) 「한국의 보세가공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우종안

101) 소고기, 분유, 마늘 등 관세 부과 품목의 밀반입 방지 등의 목적

- 일본의 경우, 농식품 가공기업과 조합의 보세공장 입주가 허용되어 현재('21.11.) 운영 중인 전체 보세공장의 15.9%가 농식품 기업이며, 현지 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적극 활용 중
- 우리나라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유무역지역 내 농식품 보세가공이 허용될 예정으로 우리 농식품 가공무역 확대가 기대
 - 한편,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내 농식품 기업 입주는 조건부로 허용되어¹⁰²⁾ 농식품 보세가공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

□ 보세가공된 농축산식품의 국내반입 허용과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고려 필요

- 주요국은 모두 보세가공한 제품의 원칙적·예외적 국내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 역내가공제도로 제조·가공된 모든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 및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
 - **(일본)** 수출계약의 파기,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보세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수 없을 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
 - **(미국)** 특정 품목(시가,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부산물)에 한해 수입·통관 후 국내반입을 허용
- 보세가공제도의 주요 목적이 가공무역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세가공 제품의 수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필요
- 보세가공된 제품의 수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예외조항의 수립이 요구
 - 급격한 시황 변화,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 강화, 계약 파기 등

102) 입주기업은 제조 품목을 전량 재수출해야 하며, 역외가공이 금지됨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대한민국 관세청(www.customs.go.kr)
2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3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 KCLA(www.kcla.kr)
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보세산업지원과)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6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김영춘, 최해범(2011.08.)
7	「주요 선진국의 보세구역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 보세창고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서동균, 이기희(2010.05.)
8	「한국의 보세가공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우종안(2012.08.)
9	「한국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가공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우종안, 송희영(2012.02.)
10	[전문가칼럼]보세공장을 이용한 관세절감 수입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2020.04.20.)
11	U.S.C.(United States Code) Title 19 Chapter 4 Section 1311.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s
12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Warehouses, Container Stations and Control of Merchandise Therein, Ch.1 §19.13
13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Warehouses, Container Stations and Control of Merchandise Therein, Ch.1 §19.14
14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Warehouses, Container Stations and Control of Merchandise Therein, Ch.1 §19.15
15	일본 「관세법」 제4절 보세공장, 제56조~제62조
16	일본 세관(www.customs.go.jp)
17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Community Customs Code(CCC)
18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Laying down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19	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Community Customs Code (Modernised Customs Code)
20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recast)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